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81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문정복·강경숙·백승아

고민정 • 진선미 • 김문수

유준병·김영배·한창민

김용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사업성을 악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으며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 요율과 100가구로 명시된 세대수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부과 요율 0.8%에서 0.4%로 낮추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여 주택공급 사업 및 정비사업 등에 용이하게 하고 학교신설이 필요한 지자체의 장에게 학교 신설 및 증축의 경비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여 지방교육청의 재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

법률 제 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세대"를 "300세대"로 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면제할 수 있다"를 "면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한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학교의 신설 수요에 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8"을 "4"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시·도는 제4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도의 일

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도교육감의 전출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내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	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	300세대
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	
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	
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	
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	
다.	
가. ~ 저. (생 략)	가. ~ 저.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부담금을 <u>면제할 수 있다</u> .	<u>면제하여야 한다</u> .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u><단서 삭제></u>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 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3. 4. (생략)
- ⑥ (생략)
-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 하다.
 - 1. 공동주택: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 2. (생략)
- 제6조(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제6조(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생략)
 - ② 시·도는 제4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 1. (현행과 같음)
- 2.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 출한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 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을 시행 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 사는 학교의 신설 수요에 관 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 · 4. (현행과 같음)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2	
1.	
	4

2. (현행과 같음)

-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4조제1항-----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증축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시 ·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 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 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후단 삭 제>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도 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 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 산에 계상하여 시·도교육감의 전출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다 음 회계연도 내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